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 - 426 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채용예정인원

가. 예정인원 : 210명 (공개경쟁 105명, 경력경쟁 105명)

채용방법	계급	채용분야		인원(명) 계	남	여	비고
총계				210	184	26	
공개경쟁 채용	지방소방사	소방		105	95	10	
경력경쟁 채용	지방소방사	구조	일반	31	31		
			수난	4	4		
		구급		40	32	8	
		소방관련학과		15	11	4	
		차량정비		2	2		
		선박(소방정)	항해	5	5		
			기관	3	3		
		구급상황관리사		2		2	
	지방소방교			2		2	
	지방소방장			1	1		

2.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1.1.~1994.12.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1.1.~1995.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①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중 **소방관련학과, 차량정비, 구급상황관리사**

- 2015.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015.01.01.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자

② 경력경쟁채용 중 **구조, 구급**

- 2015.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부산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015.01.01 이전까지 **부산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자

③ 경력경쟁채용 중 **소방정(선박)**

- **거주지 제한 없음**

라.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경력경쟁채용 자격 및 경력요건

<table>
<tr><th>분 야
(계 급)</th><th>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th></tr>
<tr><td>구조(일반)
(지방소방사)</td><td>군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table>
<tr><td>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td><td>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td></tr>
<tr><td>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td><td>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td></tr>
<tr><td>③ 기타 특수전부대</td><td>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td></tr>
</table></td></tr>
<tr><td>구조(수난)
(지방소방사)</td><td>해군해난구조대(SS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정보부대(UDU), 해병특수수색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td></tr>
<tr><td>소방관련학과
(지방소방사)</td><td>『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를 졸업한 자 또는「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2 소방관련과목(36과목)을 당해 학과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 (소방관련 전공 36과목)</td></tr>
<tr><td>항해사기관사
(지방소방사)</td><td>4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td></tr>
<tr><td>차량정비
(지방소방사)</td><td>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td></tr>
</table>

분 야 (계 급)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구 급 (지방소방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⑧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조교로 근무한 경력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경쟁채용 중 **구급상황관리사**

계 급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공통자격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
지방소방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3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분(10:00~11:40), 경력경쟁 60분(10:00~11:00)
- 시험과목

채용방법	채용분야	시 험 과 목	비 고
공개경쟁 채용	소 방	필수(3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과목) : 소방학개론[1],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2], 사회, 과학, 수학	각 과목별 20문제 100점 만점 (4지선택형)
경력경쟁 채용	소방관련학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3]	
	기 타	국어, 영어[4], 소방학개론	

1)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붙임1)
2) 소방관계법규(**공개경쟁채용**)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소방관계법규(**경력경쟁채용 중 소방관련학과**)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4) 영어(경력경쟁채용 중 **지방소방사**)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중 구조**분야는 **2배수)**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멀리뛰기(cm)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일으키기(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달리기(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종목별 측정 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를 참조(붙임2)

다. 제3차 신체검사(적성검사 포함) 및 서류전형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판정기준 붙임3 참고)
- 적성 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라. 제4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3항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함.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5.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4. 10(금)	4. 18(토)	4. 29(수)
체력시험	4. 29(수)	5. 6 ~ 8	5. 12(화)
신체검사(적성검사 포함) 및 서류전형)	5. 12(화)	5. 14 ~ 15	5. 21(목)
면접시험	5. 21(목)	5. 26 ~ 29	6. 3(수)

6.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방문·우편접수 불가)

가. 기 간

- 접수기간 : 2015. 3. 16(월) ~ 3. 20(금) 09:00 ~ 21:00
  (취소기간 : 2015. 3. 16(월) ~ 3. 27(금) 09:00 ~ 21:00)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처리단계별 상세하게 안내함)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나. 응시원서 사진 안내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에 3.5㎝ × 4.5㎝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

다. 유의사항

- 접수기간내에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종료후에는 불가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 응시표 출력은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 응시자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붙임 4)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자격제한 중 운전면허 및 분야별 자격제한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기준이며,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합니다.

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청과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라.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지정기일에만 실시하며, 서류전형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차.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응시기관 및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카.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51-760-301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 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 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 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 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 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붙임 4]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비율

<table>
<tr><th>비율
분야</th><th colspan="2">5%</th><th colspan="2">3%</th><th colspan="2">1%</th></tr>
<tr><td rowspan="5">자격증(면허증)</td><td rowspan="2">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기능장</td><td>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td><td rowspan="2">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사</td><td>기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td><td rowspan="2">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기능사</td><td>산업기사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td></tr>
<tr><td>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td><td>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td></tr>
<tr><td colspan="2">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td><td colspan="2">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td><td colspan="2">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td></tr>
<tr><td colspan="2">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td><td colspan="2"></td><td colspan="2">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td></tr>
<tr><td colspan="2">의사, 변호사</td><td colspan="2"></td><td colspan="2">응급구조사(1급), 간호사</td></tr>
<tr><td colspan="2">소방시설관리사</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사무관리</td><td colspan="2"></td><td colspan="2">컴퓨터활용능력 1급</td><td colspan="2">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td></tr>
</table>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